

審 查 報 告 書

2002. 8. 2
총무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2002. 7. 26
- 나. 提出者 : 瑞山市長
- 다. 回附日字 : 2002. 7. 26
- 라. 上程日字 : 2002. 8. 2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自治行政課長 : 崔鑽珏)

가. 提案理由

- '98년도부터 추진한 지방행정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의 해소시한인 2002. 7. 31현재 결원의 총수범위내의 초과인원에 대하여 2003. 2. 28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규정할 수 있도록 「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」중 부칙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정원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명은 2003. 2. 28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부칙 제3조제2항 신설 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'98년도부터 4년간에 걸쳐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」이 2002. 6.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음.
 - 다만, 본안은 2002. 8.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입법사례로서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「소급입법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나
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적용상의 형평성유지, 제3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.
- 따라서 관련 상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의안번호	제 2 호
의결(보고) 년 월 일	2002 . (제 회)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2년 7월 26일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02. 7. 26.

제출자 : 서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'98년도부터 추진한 지방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의 해소시한인 2002. 7. 31현재 결원의 총수범위내의 초과인원에 대하여 2003. 2. 28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규정할 수 있도록 『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』 중 부칙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정원관리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명은 2003. 2. 28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부칙 제3조 제2항을 신설

□ 기타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.
- 관련법규
 - 지방자치법 제103조
 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, 제24조
 - 충청남도 행정 12110-1502(2002. 6. 12)
 - 기구·정원규정 개정령시행에따른 지방자치단체 정·현원관리지침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2년 8월1일부터 적용한다.

정원조례개정 관계법령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】

제21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4조(기구 및 정원조례의 의결) ①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,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부칙]

대통령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
부칙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
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·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
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.
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28일까지 종류별·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
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
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